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보고서

2001. 9. 18.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8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1. 9.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김 재 형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현재 사용중인 현청사는 건립한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며, 청사가 본관 건물외 제3별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깨끗한 환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포구 성산동 369-1외 53필지 (자동차검사장 제1검사장 부지 : 교통안전공단)를 매입하여 새로운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 재산의 표시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지목	소재지	면적(㎡)					
1	전 잡	성산동 369-1외 53필지	16,529	19,250	2001년도 하반기	구청사 부지매입	교통안전공단 구로구 공동 189	일반 회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 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내용>

○ 구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 관리계획변경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성산동 369-1외 53필지인 교통안전공단 소유의 자동차 제1검사장 부지로 지목은 전과 잡종지 16,529㎡(약 5,000坪)가 되겠으며 취득 추정가액은 192억 5천만원이며 평당 취득가액은 약 385만원으로 주변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약 574만원 내지 686만원과 비교하면 동 재산의 취득가액은 주변지역의 토지시가 보다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됨.

<검토의견>

○ 20여년이 지난 노후된 현청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막대한 수선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본관 건물외에도 제3별관으로 분리되어 있고 건물 구조상으로도 방문하는 주민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 부지를 주변시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여 현대식 종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773억 5천만원이 소요될 총사업비

의 재원확보 방안과 자연녹지지역인 동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가능한지 또한 지하철6호선을 비롯한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인한 주변의 대중교통수단은 확대되어 신청사를 방문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청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원거리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재산의 부지매입비중 77억 3천만원은 본 회기중에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윤한호 위원) : 청사 부지매입 대상지의 위치와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은?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현 청사는 23년이 지난 건물로서 부지매입 후 준공까지는 7년이 걸리므로 현 청사를 30년 사용하고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고자 교통안전공단 소유의 자연녹지인 매입대상 부지는 인근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며, 위치는 외곽지역이기는 하지만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여 현 위치와 비교할 때 구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만은 못하나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평당 385만원의 추정가액은?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교통안전공단 자체 감정가액이나 매입시에는 감정가격으로 할 것임.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자연녹지를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과 예산확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이 지역을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녹지지역은 해제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심사도 관련 부서에서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없을 것임.

○ 질의요지(유남철 위원) : 구민회관 건립비는?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460억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2001. 8.

제 출 자: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현재 사용중인 현청사는 건립한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며, 청사가 본관 건물외 제3별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깨끗한 환경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포구 성산동 369-1외 53필지 (자동차검사장 제1검사장 부지 : 교통안전공단)를 매입하여 새로운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비고
	지 목	소 재 지	면적(㎡)					
1	전 잡	마포구 성산동 369-1외 53필지	16,529.0	19,250,000	2001년도 하반기	구청사 부지매입	○ 교통안전공단 구로구 궁동 189	일반 회계

3. 근 거

- 지방재정법(2000.1.12 법률 제6113호) 제77조
-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35조제1항제6호
- 지방재정법시행령(2000. 10. 20 대통령령 제16983호) 제84조제2항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2000.1.13 조례 제450호) 제36조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9.11.10 규칙 제314호) 제29조

위치도 및 현황도

